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272호 2012. 7. 6. (금)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298호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299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7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2-63호 아우라지관광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13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2-513호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고…………… 15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7. 6.

정선군 조례 제2298호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금”이라함은”을 ““보조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사업”이라함은”을 ““보조사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조사업자”라함은”을 ““보조사업자”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을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결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보조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강제징수)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u> 1. <u>“보조금”이라함은</u>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u>“보조사업”이라함은</u> 보조금의 교부대상인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u>“보조사업자”라함은</u>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6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u>다음 각호에</u>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 4. (생략)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u>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u> 제2조(용어의 정의) ----- <u>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보조금”이란</u> ----- ----- ----- ----- -----. 2. <u>“보조사업”이란</u> ----- -----. 3. <u>“보조사업자”란</u> ----- -----. 제4조(보조대상)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의 결정) ----- ----- ----- <u>다음 각 호에</u> 열거하는 ----- ----- -----. 1. ~ 4. (생략)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현행	개정안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가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u>전부 또는 일부를</u>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설></u>	-----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u>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u> -----. 1. ~ 6. (현행과 같음) <u>제18조(보조금의 반환) ①</u>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u>②</u>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결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u>③</u>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보조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u>제19조(강제징수)</u>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u><신설></u>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u>
<신설>	<u>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개 정 이 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3조의2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사유 발생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금 반환 규정 마련(제18조)
- 보조금 반환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 마련(제19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7. 6.

정선군 조례 제2299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작목반”이란 농축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협동조합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된 생산품을 말한다.
6.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9.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이란 농축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

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및 존속기한) 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출연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영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용자기관인 농·축협과 협약체결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 법인 및 작목반으로 한다.

②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지역특화육성 사업
3. 지역명품 사업
4.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지원 사업(농축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재해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금지원 및 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사업당 지원한도액은 사업비의 80% 이내로 하며, 농업인은 5천만원, 농업법인 및 작목반인 경우는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한다.

2. 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고정금리로 한다.
4.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지원 사업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한다.
5.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이 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되, 총 연체 이자액은 융자금의 40%를 초과하여 부과 할 수 없다.

제13조(기금의 신청)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3조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에서 적정하게 대상자 및 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4조(사업대상선정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지원대상자(농업법인 및 작목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결정 사실과 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회수)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기금을 받은 자가 군 외 지역으로 이주 및 전출 하였을 때

제16조(기금반환 통보) 제15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위탁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기금 대출시 시중금리로 계산하여 원금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농업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농정기획담당

제19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현재의 기금설치조례는 2003년부터 매년 군비 10억원 이상을 출연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설치 운영하여 2012년도 까지 기금이 95억원이 조성되고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 여건에 따라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기금조성 재원 및 존속기한 규정(제3조)
-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제6조)
- 기금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규정(제11조)
- 기금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액 규정(제12조)
- 기금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제13조~제14조)
- 기금의 회수 및 반환사항 규정(제15조~제16조)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2-63호

아우라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12년 7월 3 일

정 선 군 수

가. 관 광 지 명 : 정선 아우라지 관광지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유천리 일원

다. 관광지 면적 : $A=123,800\text{m}^2$

라. 조성계획면적 : $A=123,800\text{m}^2$

마.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 2002년 ~ 2011년(10년) $\Rightarrow$ 2002년 ~ 2013년(12년)
- 년차별 예산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관광지의 명소화를 위하여 옛 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담아 총각상을 설치하며,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휴양문화시설내 뗏목수상체험장을 녹지로 변경하고,
- 관광지가 하천에 의해 양분되어 관광지 이용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원활한 관광 순환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렁다리 설치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추진하고자 함.
- 시설별 변경내역 : “별 첨”

바. 조성계획변경 도서 : 게재생략(정선군청 관광문화과 비치)

○ 시설별 변경내역

구 분		토 지 이 용(㎡)		관 광 시 설(동)		건축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23,800	123,800	3	3	1,389	1,389	-
소 계		17,139	17,139	1	1	119	119	-
공 공 편 익 시 설	도 로	5,299	5,299					-
	주 차 장	5,155	5,155					-
	휴게 / 아리랑광장	1,527	1,527					-
	화 장 실 (소형)	164	164	1	1	119	119	-
	수변산책로	4,586	4,586					-
	데크산책로	408	408					
소 계		27,128	19,108 감) 8,020	2	2	1,270	1,270	-
휴 양 문 화 시 설	뗏목/수상체험장	8,020	0 감) 8,020					-
	아리랑전수관 / 박물관	3,130	3,120 감) 10	1	1	1,240	1,240	-
	달오름공원	1,620	1,620					-
	가시비공원	646	646					-
	수변휴게소	740	740					
	처녀상	10	10					
	총각상	-	10 증) 10					
	여송정	30	30	1	1	30	30	
	야외공연장	348	348					
	잔디광장	12,584	12,584					
소 계		79,533	87,553 증) 8,020					
기 타 시 설	녹 지	40,360	48,360 증) 8,000					-
	보전녹지	39,173	39,173					-
	오 작 교	-	-					
	출렁다리	0	20 증) 20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513호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1.1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정정 결정이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2012. 6. 29.

정 선 군 수

1. 2012.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에 따른 정정 결정·공시
가. 공시일 : 2012. 6. 29.
나. 대 상 :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90-1외 50호의 주택
다. 내 용 :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정정사유 등
라. 장 소 : 정선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2. 직권정정 결정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2012. 6. 30. ~ 7. 31.
나. 신청자격 : 주택(건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법률상)
다. 제출장소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마. 신청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함.

2012.1.1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결정 내역서

연번	기준년도일자	개 별 주 택 소 재 지			주 택 동 수	당초결정 공시가격(원)	정정결정 공시가격(원)	개별주택가격 정정사유	비고
		법정동	법정리	지번					
1	2008.1.1기준	정선읍	봉양리	335-3	1	118,000,000	23,700,000	과거년도 토지특성착오	직권 정정
2	2009.1.1기준	정선읍	봉양리	335-3	1	111,000,000	23,200,000	과거년도 토지특성착오	직권 정정
3	2010.1.1기준	정선읍	봉양리	335-3	1	111,000,000	23,200,000	과거년도 토지특성착오	직권 정정
4	2011.1.1기준	정선읍	봉양리	335-3	1	115,000,000	23,300,000	과거년도 토지특성착오	직권 정정
5	2012.1.1기준	임계면	직원리	524-3 0	1	15,600,000	51,300,000	주택특성조사착 오(건물)	직권 정정
6	2012.1.1기준	정선읍	신월리	790-1	1	74,100,000	69,900,000	비교표준주택선 정착오	이의 신청
7	2012.1.1기준	정선읍	봉양리	146-6	1	171,000,000	167,00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8	2012.1.1기준	고한읍	고한리	62-32 8	1	87,200,000	97,90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9	2012.1.1기준	사북읍	사북리	275	1	51,900,000	46,60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10	2012.1.1기준	신동읍	예미리	812-1	1	93,700,000	107,00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11	2012.1.1기준	화암면	화암리	784	1	75,900,000	72,00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12	2012.1.1기준	남면	문곡리	569	1	10,300,000	9,42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13	2012.1.1기준	남면	낙동리	435	1	6,710,000	5,37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14	2012.1.1기준	남면	유평리	700	1	57,700,000	51,90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15	2012.1.1기준	북평면	남평리	1294- 1	1	61,900,000	61,10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16	2012.1.1기준	북평면	남평리	1294- 1	2	60,100,000	59,40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17	2012.1.1기준	임계면	반천리	211-6	1	53,500,000	49,100,000	인근가격과 불균형 조정	이의 신청
18	2012.1.1기준	정선읍	애산리	432-1 00	2	19,2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19	2012.1.1기준	정선읍	북실리	701-2 2	1	15,0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20	2012.1.1기준	고한읍	고한리	335-2	1	10,500,000	0	중복등재 삭제	직권 정정
21	2012.1.1기준	고한읍	고한리	104-4 0	1	7,78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22	2012.1.1기준	고한읍	고한리	32448	1	52,9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23	2012.1.1기준	고한읍	고한리	367-1 3	1	20,0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24	2012.1.1기준	고한읍	고한리	384	1	105,0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25	2012.1.1기준	사북읍	사북리	386-3 0	1	16,1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26	2012.1.1기준	사북읍	사북리	344-6 5	1	152,0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27	2012.1.1기준	사북읍	사북리	368-6	1	67,0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28	2012.1.1기준	사북읍	사북리	219-1 9	1	18,1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29	2012.1.1기준	사북읍	사북리	338	1	1,91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30	2012.1.1기준	사북읍	사북리	338	2	1,55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31	2012.1.1기준	사북읍	사북리	산143 -11	1	46,4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32	2012.1.1기준	사북읍	사북리	산140 -1	1	2,95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33	2012.1.1기준	신동읍	천포리	257	1	29,8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34	2012.1.1기준	신동읍	조동리	4-5	1	2,49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35	2012.1.1기준	신동읍	조동리	90-32	1	5,36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36	2012.1.1기준	화암면	석곡리	1085	1	8,3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37	2012.1.1기준	남면	무릉리	495	1	17,6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38	2012.1.1기준	남면	광덕리	617	1	2,86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39	2012.1.1기준	북평면	북평리	54	1	3,44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40	2012.1.1기준	북평면	북평리	325-5	1	4,97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41	2012.1.1기준	북평면	북평리	706-1 3	2	11,7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42	2012.1.1기준	임계면	가목리	39	1	4,26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43	2012.1.1기준	임계면	송계리	627	2	15,3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44	2012.1.1기준	임계면	반천리	817	1	2,57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45	2012.1.1기준	임계면	용산리	558-3	1	10,1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46	2012.1.1기준	여량면	여량리	149-1 6	1	17,2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47	2012.1.1기준	여량면	여량리	141-3 9	1	98,1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48	2012.1.1기준	여량면	여량리	125	1	21,8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49	2012.1.1기준	여량면	여량리	149-1 11	1	15,50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50	2012.1.1기준	여량면	여량리	748-4	1	4,39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
51	2012.1.1기준	여량면	여량리	279	4	7,560,000	0	철거로 인한 공시취소	직권 정정